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290호, '23.3.28. 공포 및)됨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함
- 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419호, '23.5.19. 공포 및 시행)되어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·권한·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,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,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- 다. 지역사회로의 급격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의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제19419호, 23.5.19. 공포 및)되었고, 위 취지를 고려하여 예방접종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의 유형,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제2호 중 “역학조사관”을 “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3 중 “법 제18조의4제2항”을 “법 제18조의4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예방접종”을 “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”으로 한다.

2.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자료

3.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자료

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5(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)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를 상시 5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.

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가 및 노무제공자 중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

을 받는 자로 한다.

③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

2.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

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범위는 접종한 다음날 1일로 한다. 단,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⑤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23조의6(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)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근로자가 접종한 사실 및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3.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4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

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접종한 사실 및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)”을 “(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역학조사관”을 “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”으로 한다.

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”로 한다.

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, 장애유형, 소득분위에 관한 정보
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정보 중 장애중증도, 장애유형, 소득분위에 관한 정보
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조에 따른 사업장 정보
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정보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정보
5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정보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 정보
6. 그 밖에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역학조사반의 구성) ① ~ ③ (생 략) ④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 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 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(생 략) 2. 법 제60조의2에 따른 <u>역학조 사관</u> 3. ~ 5. (생 략) ⑤ (생 략)	제15조(역학조사반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역학조 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3(지원 요청 등의 범위) <u>법 제18조의4제2항</u> 에 따라 질병 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파견 및 물자 지원, 역학조사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, 감염원 및 감 염경로 조사를 위한 검사·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.	제16조의3(지원 요청 등의 범위) <u>법 제18조의4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21조의2(예방접종 대상자의 개 인정보 등) ① (생 략)	제21조의2(예방접종 대상자의 개 인정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2.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내용에 관한 자료

3. (생략)

<신설>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자료

3.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자료

4.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23조의5(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)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를 상시 5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.

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가 및 노무제공자 중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

<신 설>

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
자로 한다.

③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
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요건
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
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
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
된 때

2.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
접종

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
비용의 지원범위는 접종한 다음
날 1일로 한다. 단, 접종한 다음
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
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⑤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
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
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23조의6(예방접종 휴가 비용지
원 절차) ① 법 제32조의2제1항
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
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하는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
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

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근로자가 접종한 사실 및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3.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4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접
종한 사실 및 접종한 다음날
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
는 서류

2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
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
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고용
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

3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
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
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
받은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
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
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
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
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
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
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

제26조(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
무 등) ① 삭 제

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
업무를 담당한다.

1. ~ 6. (생 략)

③ 삭 제

④ (생 략)

제32조의2(제공 요청할 수 있는
정보) <신 설>

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비용지원
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
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
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
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
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
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
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)

②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
관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2(제공 요청할 수 있는
정보)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3

호 및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
정보를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 및
제6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
양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
증도, 장애유형, 소득분위에
관한 정보

<u>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	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정보 중 장애중증도, 장애유형, 소득분 위에 관한 정보 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조에 따른 사업장 정보 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정보 및 「의 료급여법」 제9조에 따른 의료 급여기관 정보 5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정보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 정보 6. 그 밖에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<u>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</u>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136